

2023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1차 공고

경기 북부지역 내 중소기업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며,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5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재정이 열악하여 환경오염방지 설비 투자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지원하여 환경관리 부담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지원내용

-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70%(최대 68,600천원) 지원(VAT 제외)

2. 지원대상

○ 지원 자격

- 경기 북부지역 소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상습초과, 고질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오염도 개선이 시급한 취약사업장 우선 지원
- 북부지역 하천 수질 관련 최대 현안인 한탄강 수질·색도 저감 시설 설치·개선사업장 우선 선발

○ 지원제외

- 과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
-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3년 이내 설치한 신규 설치 시설
-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시설(기지원 시설 중복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 ~ 예산소진 시까지

※ 1차 평가 예정일(6/23), 1차 평가는 6월 15일(목) 접수분까지 예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10074)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에코센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본부 환경기술지원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4부 제출)
 1.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서(개선계획서, 산출내역 등)
 2.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4.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업체)
 5.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8.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신청서 제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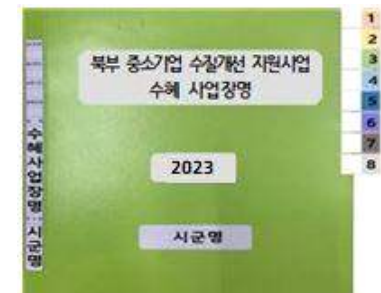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총 5부

구비서류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파일철로 제출

(원본 1부, 사본 4부)



○ 선정절차

- 신청서에 의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 예산 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 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담당자(환경산업본부): 박종원 대리(환경기술지원팀)
- 담당자 연락처 : 031-985-0586
- 담당자 이메일 : one@ggeea.or.kr
-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서체인 경기천년체 다운로드 권장

붙임 2023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2023년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 사업개요

- 주관/시행 : 시군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사업비 : 715,000천원(도 328,000천원, 시군비 387,000천원)
- 예산부담 : 보조금 70%(도비 시군별 차등보조), 자부담 30%
- 사업량 : 10개소

구분	지자체	사업량	소요예산(단위 : 천원)			비고
			총사업비	도비	시비	
계		10	715,000	328,000	387,000	
1	파주시	1	70,000	28,000	42,000	도비 40%
2	양주시	3	225,000	90,000	135,000	도비 40%
3	포천시	3	210,000	105,000	105,000	도비 50%
4	동두천시	2	140,000	70,000	70,000	도비 50%
5	연천군	1	70,000	35,000	35,000	도비 50%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3년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를 득한 사업장
 - 하천 수질에 영향이 큰 오염부하량이 높은 제조업 군(섬유, 피혁, 식품, 육가공 등)의 폐수 배출사업장
 -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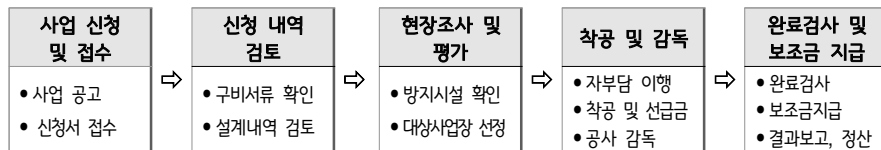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우선 지원
 - 폐수처리공법을 변경하여 수질개선(색도 등)에 기여도가 높게 예상되는 사업장
 - 신천 및 한탄강 수계에 영향이 큰 4개 시군(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 소재한 사업장
 - 주거지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
 - ※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개별업체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은 예외
 - 무단방류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 의무사용기간은 환경시설 특성상 내구성 및 처리효율이 감소되는 통상적인 기간 “3년”으로 한다.

□ 보조금액 및 집행범위

-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70% 지원(최대 68,600천원)
- (집행범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붙임 1]*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교체 공사
 - ※ 방지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펌프, 브로워, 배관, 철구조물 등) 교체 및 보수 비용 포함

□ 추진절차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참여 사업장 조건 및 대상기업 선정 기준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가능
- 개선계획서 작성은 지원사업 목적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 개선계획 및 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며, 설계·시설비의 적정성과 개선 효과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의·평가되어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신청서류 준비

-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필수 제출
 - 개선계획서의 오염물질농도(저감효율)는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토대로 작성
- 폐수배출시설허가(신고)필증 제출 유의사항
 - 교체하고자 하는 방지시설의 설치일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신고필증의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배출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게 신청서류 작성,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는 배출사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모두 제출
- 제출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 단,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기구류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최초 허가 및 신고한 시설의 용량 및 용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

- 선정 이후 수질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수질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은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수질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설치 완료 후 가동개시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지원사업 선정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 전·후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통한 수질오염물질 측정예정으로 채수 일정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전 수질측정기록부가 없는 경우 기본항목 5가지에 대한 수질측정 후 측정기록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폐수배출항목에 색도가 신고되어있는 경우 색도 추가하여 제출
-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 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은 당초 신청된 개선계획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지원사업 중 추가되는 금액은 지원 대상기업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시설의 의무 사용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원기업은 지원받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기업은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함

【붙임 1의 2】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031-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F A X : 031-000-0000)			
	업 종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	법인등록번호		
	평균매출액	'22년 평균액	주 생산품		
	종 별	신고필증에 명시된 종수	자산총액		
사 업 내 역	배출시설명 (용량)	ex) 26.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신고필증상 배출시설코드 작성)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ex) 물리·화학·생물학적처리(1,000m³)
	설치·개선 내용	설치·개선 부분과 필요성 서술			
	재 원 별 (VAT제외) 단위 결사	총소요금액	금123,000,000원(금일역이천삼백만원)		
		지원신청액	금68,600,000원(금육천팔백육십만원)		
	자채부담액	금54,400,000원(금오천사백사십만원)			
시 설 공 사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			
	대표자 (담당자)	대표자 : 000	(연락처 :)		
		담당자 : 000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 입력)		
위와 같이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 (인감도장) 신청인(전문공사업체 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4부) 2.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4.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등록증(시공업체) 5.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8.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 선 계 획 서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상세히 서술)
- 기타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사항 등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역

- 가. 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내역
-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오염물질농도	항 목 (단위)	BOD	TOC	T-N	T-P	SS
	지원 전					
	지원 후					
	저감 효율					

※ 시설 지원 전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시험 성적서 등 첨부)
지원 후 농도는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지원시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측 농도 자료 제출)

2) 공정도 (표로 작성)

나. 설계 사양

- 다. 유지관리계획
- 1) 연간 유지관리계획
- 2) 연간 유지관리비용 산출

3.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설계 작성

작 성 자		설 계 용 역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나. 공사비 총괄내역

공 사 종 별		금 액 (단위 : 원, VAT제외)	비 고
순 공 사 원 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소 계		
경 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합 계			만단위 절사

다. 공사비 내역서(VAT제외) * 자체서식 활용 가능

공사종류	규격	재질(형식)	수량	금액(원)	비고
합계					
토목공사					
-					
-					
소계					
철구조물공사					
-					
-					
소계					
기계공사					
-					
-					
소계					
배관공사					
-					
-					
소계					
전기공사					
-					
-					
소계					
건축공사					
-					
-					
소계					
기타공사					
-					
-					
소계					

라. 공사비 세부내역

1) 공사 단가 계산서

2) 공사 물량 산출 내역서

=> 2023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 의거하여 작성하며 일위대가표, 단가비교서 (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등록가격 등 3가지 항목 이상) 첨부

*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견적서 첨부 시 비교견적 첨부

※ 공사 부분별 내역서 작성방법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환경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 특수사항, 특기사항에 의한 경우는 별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 공사 설계도면

- 전체시설 배치도
- 단위 시설 제작도 (치수 표시된 도면)
- 배관 설치도 (치수 표시된 도면)
- 전기판넬 외형 및 회로도
-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은 별도의 도면 제출

※ 공사 설계도면의 경우 A3 제출

5. 수질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6. 사업장 소재지 약도

사 업 장 소 재 지 약 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붙임 1의 4】

이행확인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
	주 소	
환경전문 공사업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 :)
	주 소	

상기 본인은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환경전문공사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붙임 1의 5】

위임장

수임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위임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사업 내역	방지시설	종류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각 1부)

년 월 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의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